

# 독일민법상 스포츠여행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자의 민사상 책임

## Zivilrechtliche Haftung des eines Reiseveranstalters für Sportsreise in Deutschland

김기영\*  
Kim, Ki-Young

### 목 차

- I. 서론
- II. 여행계약의 개념과 당사자의 의무
- III. 스포츠시설과 합의한 스포츠행사에 대한  
여행업자의 의무위반
- IV. 독일민법(BGB)상 여행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V. 결론

### 국문초록

오늘날 여행업자의 여행서비스와 휴가서비스는 휴가내에서 스포츠활동이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스포츠급부의 가능성들을 담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행업자의 의무들은 급부불이행시 기타의 서비스의 부분급부들과 비교하여 항상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행주최자 혹은 여행업자(Reiseveranstalter)의 개념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

논문접수일 : 2014.03.30

심사완료일 : 2014.04.30

게재확정일 : 2014.05.01

\*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에서 관광회사는 급부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로 다루어진다. 여행업자로서는 항공편, 배편, 철도 혹은 버스여행, 호텔로의 이동, 숙박 및 식사, 스포츠행사 및 스포츠가능성들, 여행안내와 같은 개별급부들을 여행카탈로그에 따라 그 근거로 산출된 통일적인 전체가격으로 제공하고 시행하는 것(패키지여행)이 일반적이다.

스포츠관광과 같이 여행사가 여행안내서에서 사전에 작성한 여행프로그램에 따라 가령 골프, 테니스나 스키강습, 스킨스쿠버나 윈드서핑, 요트, 스키여행 및 산악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는 다른 급부의 주선(스포츠강사나 산악안내인) 및 다른 급부의 제공자들의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여행업자가 된다. 여행자로서는 항상 각 분야의 여행급부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스포츠협회, 단체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도 주최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민법상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여행업자의 개념과 계약당사자들의 특별한 의무들(II)과 의무위반들(III)을 다루고, 독일법원들이 인정한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IV), 마지막으로 결론(V)을 도출하고 있다.

**주제어** : 여행주최자, 스포츠, 스포츠여행, 여행계약, 골프, 테니스, 스키

## I. 서론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2014~2018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규모를 현 37조원에서 53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에 IT기업의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채로운 스포츠를 즐기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스포츠시장의 수요도 확대해 전체 스포츠산업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학계·언론계·산업계 등 30여 명의 산업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으며, 문체부는 계획을 통해 2018년에 국내 스포츠 시장이 5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약 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스포츠관광의 유형으로 스포츠관광을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가을철에 20대와 40대가 스포츠관광이나 고적답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선호하는 종목으로는 전 연령층에 있어서 스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20대와 30대는 국제경기관람과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오늘날 여행업자의 여행서비스와 휴가서비스는 휴가내에서 스포츠활동이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스포츠급부의 가능성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레저 붐으로 안내산행을 사회체육단체 또는 일반 안내산악회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등산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고발생 시 여행주최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행업자의 의무들은 급부불이행시 기타의 서비스의 부분 급부들과 비교하여 항상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내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들이 나온바 있다.<sup>2)</sup>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 수집하고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많다고 본다. 특히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독일이다. 1979년부터 독일은 민법 개정으로 독일민법전에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 후 1994. 6. 24. '유럽공동체 패키지여행 여행지침'(EG-Pauschalreise-Richtlinie)에 따라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다. 독일민법은 도급에 관한 제7

- 1) 이재형, 스포츠관광 정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 (2003.6), 127면.
- 2) 주지홍, 기획여행계약에서 스포츠옵션활동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3호 통권 제24호 (2010. 8), 135면; 강정혜,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2007. 8), 155면; 손석정, 스포츠관광 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0권 1호(2011), 187면.

절 제2관에서 여행계약에 관하여 13개 조문(제651a조~제651m조)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의 의의(제651a조), 계약이전(제651b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51c조~제651g조), 여행주최자의 책임제한(제651h조), 여행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651i조~제651j조), 여행주최자의 상환의무(제651k조), 홈스테이 통학계약(제651l조), 편면적 강행규정(제651m조)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독일민법상의 스포츠여행계약과 관련된 사례<sup>3)</sup>를 중심으로 여행업자의 개념과 계약당사자들의 특별한 의무들(II)과 의무위반들(III)을 다루고, 독일법원들이 인정한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IV), 마지막으로 결론(V)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여행계약의 개념과 당사자의 의무

### 1. 여행주최자의 개념

독일에서 여행주최자 혹은 여행업자(Reiseveranstalter)의 개념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방법과 판례의 법형성에 맡겨져 있다. 판례와 학설에서 관광회사는 급부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로 다루어진다.<sup>4)</sup> 여행중개인은 여행업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와 여행업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할 뿐, 여행급부의 실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5)</sup> 여행중개인은 여행업자가 편성한 총괄여행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하려고 내놓은 사람을

3)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Fritzweiler, Neueste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NJW 2000, 997; Fritzweiler,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in den Jahren 1999 und 2001, NJW 2002, 1014; Fritzweiler,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in den Jahren 2002 und 2003, NJW 2004, 989.

4) Führich, Reiserecht, 5. Aufl. (2005), Rn. 74ff.; Ton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Vorbemerkungen vor §§ 651a bis 651m, Rn 20ff.

5) 이에 대해서는 권순희, 독일법상 여행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 비교사법 제17권 4호 (통권 51호), 376면(381).

말한다. 전형적인 여행중개인으로 여행사(Reisebüro)를 들 수 있는데 여행사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다른 견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중개자(Reisevermittler)로 나타난다.<sup>6)</sup>

오늘날 다수설은 독일 민법(BGB) 제651a조에 따른 여행계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여행급부가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여행급부, 가령 항공기편여행은 이러한 여행계약에 속하지 아니한다.<sup>7)</sup>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개별급부들(가령 항공편, 배편, 철도 혹은 버스여행, 호텔로의 이동, 숙박 및 식사, 스포츠행사 및 스포츠가능성들, 여행안내)을 여행카탈로그에 따라 그 근거로 산출된 통일적인 전체가격으로 제공하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패키지여행).<sup>8)</sup>

여행사가 여행안내서에서 사전에 작성한 여행프로그램에 따라 가령 골프, 테니스나 스키강습, 스킨스쿠버나 윈드서핑, 요트, 스키여행 및 산악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는 다른 급부의 주선(스포츠강사나 산악안내인) 및 다른 급부의 제공자들의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로는 여행업자가 된다.<sup>9)</sup> 각 분야의 여행급부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스포츠협회, 단체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도 여행업자로 본다.

물론 여기서 극히 드문 경제적 위험만 함께 고려하고 대부분 수익목적, 회원들의 연대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목적지향적인 단체생활이나 사업장의 분위기를 위협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행계약법상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도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하지만 상업적인 테니스나 스키학교가 일부 급부인 운송, 숙박, 운동시설 및 교육시간, 즉 소위 훈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급부

6) BGH, NJW 1995, 2629.

7) Führich, Reiserecht, 5. Aufl. (2005), Rn. 97.

8) Ton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Vorbemerkungen vor §§ 651a bis 651m, Rn 20ff.

9) LG Hannover, NJW-RR 1986, 1055 (1056): 이에 대해서는 Noll, Reiseaktivitäten von Vereinen und Verbänden im Licht des Pauschalreiserechts, RRa 2004, 98.

10) 그 외에도 산악협회가 주최한 회원들에 대한 산악여행에 대해서는 OLG Stuttgart, NJW 1996, 1352; OLG Celle, NJW-RR 2002, 559 = SpuRt 2003, 24 (스포츠강사협회나 비회원).

들은 상업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행급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 때문에 산악학교도 숙박, 펜션과 결합된 스키여행, 클럽산악인의 안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여행급부로 파악해서 여행업자로 볼 수 있다.<sup>12)</sup> 마찬가지로 사립스포츠학교나 스포츠클럽의 소유자도 스키를 포함한 어떤 스키과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로 볼 수 있다.<sup>13)</sup>

## 2. 여행주최자의 의무

여행업자의 의무들, 즉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는 여행확인이나 여행카탈로그의 급부안내에서 도출된다.<sup>14)</sup> 안내서에서 담고 있는 정보가 가령 테니스, 비치발리볼 혹은 골프장의 보장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독일민법에 따른 정보의무에 대한 규정(BGB-InfoV) 제4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여행제공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sup>15)</sup>

여행업자가 여행현지에서 다른 주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계약급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자신의 여행안내서에 파트너중개업자의 여행은 명시적으로 타인의 급부로 정하고 있고 이는 옵션으로 티켓으로 확인받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Frankfurt a.M. 지방법원(LG)이 사파리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업자가 건강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sup>16)</sup>

마찬가지로 특별히 테러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숙박의 경우와 같이 중요한 정보제공도 주된 의무로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들에게 가령 수상스포츠,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의 극히 제한적인 사용가능성과 같은

11) 평생교육원이나 언론사도 운송, 숙박 및 여행안내를 하는 경우 여행업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로는 LG Hildesheim, VuR 1989, 140; LG Darmstadt, NJW 1978, 2300.

12) OLG München, NJW-RR 2002, 694 = SpuRt 2002, 117 (118): 스키여행에 대해 자세한 것은 Rodegra, Skiurlaub und Recht, MDR 2009, 1322 ff.

13) 사립학교의 경우 AG Essen, NJW-RR 1993, 1401.

14) BGH, NJW 2000, 1188 (1189): Ton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 651a Rn. 71, 74.

15) Ton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 4 BGB-InfoV Rn. 23ff.

16) LG Frankfurt a. M., NJW-RR 2005, 131.

특별하고 비전형적인 위험상황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sup>17)</sup>

계약상 부수적 의무들은 가령 전형적인 날씨 상황(눈이나 바람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sup>18)</sup> 마찬가지로 주최자는 불법행위상의 보호의무<sup>19)</sup>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시설이나 기계의 제공시 위험하지 않는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판례<sup>20)</sup>에서도 스키장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스키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모집한 여행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 운영실태, 지형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판단하여 위 스키장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여행자의 의무

하지만 여행자도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들을 부담하는데 이중에서도 산악여행이나 요트와 같은 스포츠행사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피하기 위한 협력의무나 정보의무들이 성립한다.

17) BGH, NJW 1982, 1521; OLG Frankfurt a. M., RRa 2003, 255.

18) Tonner/Krause, Urlaub und Witterungsrisiko, NJW 2000, 3665 (3666); Rodegra, Skiurlaub und Recht, MDR 2009, 1322

19) 이에 대해서 여행카탈로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휴양호텔의 수중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여행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LG Köln, NJW-RR 2005, 704.

20)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3377 판결(기획여행 중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

### Ⅲ. 스포츠시설과 합의한 스포츠행사에 대한 여행업자의 의무위반

#### 1. 스포츠시설, 스포츠설비, 스포츠기계 및 스포츠행사의 제공

##### 1) 스포츠시설, 스포츠설비, 스포츠기계의 하자

스포츠시설의 하자에 대해서 여행업자는 과실 없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여행의 특정한 모습은 도급계약상 결과채무로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여행의 장애<sup>21)</sup>나 스킨스쿠버코스과 같은 스포츠가능성이 일부급부로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종 스포츠시설이나 기계들이 그 상태를 근거로 이용될 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스포츠활동이 나쁜 기상상태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Frankfurt a.M. 지방법원(LG)은 여행업자가 명시적으로 여행안내서나 계약에 스스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업자는 스키지역의 눈상태의 안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상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생활상의 위험으로 파악해 여행업자의 책임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여행업자가 정확한 날씨상황을 알고 있다면 여행이 기상의 비전형적인 변화로 상당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sup>23)</sup>

여기서 여행주최자에게 스스로 설명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면 여행자가 이에 따른 윈드서핑을 예약한 경우 스포츠활동의 침해에 대한 높은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바람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4)</sup> 법적으로 수상스포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업자는 현재의 바다오

21) OLG Frankfurt a. M., NJW-RR 2005, 132.

22) LG Frankfurt a. M., NJW-RR 1991, 879 (879).

23) LG Frankfurt a. M., NJW-RR 1992, 890.

24) OLG Frankfurt a. M., NJW-RR 2003, 1139.



염상환이나 우천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동계스포츠지역에서 스키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사실상 작동되어야 한다.<sup>25)</sup>

Frankfurt a.M. 고등법원(OLG)의 판결<sup>26)</sup>에 따르면 “사진여행”으로 킬리만자로(Kilimandscharo)의 등반을 예약한 여행단체의 경우 20년간의 킬리만자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행업자가 장기간의 비나 안개와 같은 기상상황의 악화시 등반의 목적이나 운하의 촬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행안내서 적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는 “환경관찰의무(Umweltbeobachtungspflicht)”로 표시하고 있다.

## 2) 스포츠시설, 스포츠설비, 스포츠장비의 사용가능성의 제한과 하자

여행업자는 스포츠시설, 스포츠설비, 스포츠기계의 경우 이에 대한 “제공의무(Zurverfügungstellungspflicht)”이외에 이러한 시설의 안전에 대한 거래안전의무도 있다. 따라서 여행업자는 스포츠사고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상태를 관찰해야 하고 각각의 필요한 안전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업자는 가령 잠수기계, 요트, 서핑이나 수상스키와 같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스포츠장비들의 경우에도 그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들을 부담한다.

여행업자는 패키지여행의 경우 승마여행을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 말의 상태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감독해야 한다. 신경이 예민한 말에 대한 승마사고시 독일 연방대법원(BGH)<sup>27)</sup>은 말의 상태가 승마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여행의 하자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행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광고 및 여행안내서에서 스포츠가능성을 약속하였다면 그가 마련한 여행을 준비하고 시행할 경우 계약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상의 책임도 성립할 수 있는 거래안전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sup>28)</sup>

25) Tonner/Krause, Urlaub und Witterungsrisiko, NJW 2000, 3665 (3666).

26) OLG Frankfurt a. M., NJW-RR 2002, 272 = SpuRt 2002, 68.

27) BGHZ 103, 298 (303ff.) = NJW 1988, 1380; BGH, NJW 2000, 1188.

28) BGHZ 103, 298 (303ff.) = NJW 1988, 1380; BGH, NJW 2000, 1188.

주최자가 테니스장도 갖춘 특별한 호텔시설을 그와 같은 하자가 없는지 검  
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여행자에게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주최  
자만이 알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sup>29)</sup> 여행주최자는 테니스장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적어있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만 항상 전  
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여행자의 과실상계도 물론 고려된다.<sup>30)</sup> 이와는  
달리 Düsseldorf 고등법원(OLG)은 여행자가 배여행을 예약하고 출발하기 전  
에 선박이 날씨가 안 좋은 경우 갑판에 전체여객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  
는 사실을 출발 전에 알 수 있었다면 이로 인해 여행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따라 스스로 의도한 여행자의 자기위험에 대해서는 여  
행업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였다.<sup>31)</sup>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단체와 연맹들에 대해 독일통설이 여행주최자로 파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주최자와 그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통상 밀접하기 때문에 독일 민법(BGB) 제277조의 준용으로 주최자의  
책임을 완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 특별한 스포츠수업의 제공

원칙적으로 가령 개인 스포츠학교나 스포츠단체의 범위에서 스키학교나 테  
니스학교 혹은 스포츠수업에 따른 개인 스포츠교습관계에 따른 스포츠학교의  
의무들도 여행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교육계약이나 스포츠  
관리계약들은 여행업자의 다른 급부들과는 달리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급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의 유형에 따라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스포츠기술의 전수나 동시에 스포츠종류나 장비의 특별한 위험들로부터 학생  
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sup>32)</sup>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  
행주최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29) OLG Köln, NJW-RR 2004, 59.

30) LG Hannover, NJW-RR 1986, 1055 (1056): 50% 과실상계비율.

31) OLG Düsseldorf, NJW-RR 1992, 1461 (1462).

32) 이에 대해서는 Fritzweiler, in: Praxishandbuch Sportrecht, 1998, Teil 3 Rn. 54ff.

여행업자가 패키지여행에서 가령 스키여행, 카누, 잠수, 수상스키나 다른 교육과정과 같이 스포츠행사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행보조자(스포츠강사, 산악안내인)의 급부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업자가 통설적인 판례에 따라 스포츠여행의 준비, 조직과 시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무들은 특히 스포츠종류에 따라 자격을 갖춘 참가자가 아니라 초보자가 가령 카누 혹은 스키여행에 참가를 하는 경우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sup>33)</sup>

이에 따라 카탈로그에서 강에서 2인승 카누여행을 제공하는 것을 3명이 보트에서 조용한 수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경우에는 여행업자는 안내서의 설명을 근거로 문외한이나 스포츠경험이 없는 관심자도 여행과 카누여행에 대해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강의 흐름이 가져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지적을 하지 않거나 오로지 숙련된 자만이 카누를 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스포츠 사고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주관적으로 요건을 갖춘 능력에 대한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sup>34)</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경우 모든 위험들이 여행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여행자가 해발 3000미터의 산악여행의 전형적인 위험에서 도출되는 위험의 실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35)</sup>

위에서 언급한 여행업자의 의무들 이외에도 여행업자의 의무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이행보조자(스포츠강사, 산악안내인, 아마추어선수)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확대된다. 또한 여행업자의 특별한 의무들은 각각 해당스포츠종류나 스포츠행사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이와 결부된 안전기준과 안전관련 규정들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스포츠강사에 대해 스포츠교육과정이나 이벤트에서 스포츠계획

33) Fritzweiler, Sport als Gegenstand einer Urlaubsreise - Vertragliche und deliktische Haftung des Reiseveranstalters, NJW 2005, 2486(2488).

34) LG Frankfurt a. M., NJW-RR 1992, 823.

35) LG Frankfurt a. M., NJW-RR 1991, 1076.

의 책임자로서 단체를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별히 교육받은 인력으로  
서 이들에게 여행고객의 입장에서 특별한 경험, 지식과 자격을 기대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sup>36)</sup>

독일에서 잘 알려진 “Jamtal-눈사태사고”의 사례는 산악학교의 행사와 관련  
하여 법원이 독일민법(BGB) 제651a조 이하에 따라 여행업자의 책임의 범위  
에 대해 다루고 있다. :

Jamtal-Hütte 근처 Silvretta 지역 오스트리아 주최자가 시행한 스키여행과 스  
노보드과정에서 눈사태예보기관이 알려준 “현저하게 높은 눈사태의 위험”에  
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을 하고 각각 산악안내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여  
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산악안내인은 기상악화로 인해 복귀를 결정하였고 앞  
선 3개의 그룹들은 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약 40%의 경사각도로 이루어진 등  
반길을 선택하였고 투어그룹들의 위로 약 75미터에서 눈사태가 시작되었고  
산악안내인 뒤에 따라 오던 전체 5개 그룹들중 3개 그룹들의 참가자들이 추락  
하여 부상과 사망의 결과를 입게 되었다.

München 고등법원(OLG)의 판결<sup>37)</sup>에 따르면 눈사태사고가 약 40%의 경사  
각도로 이루어진 등반길을 급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들이 카탈로그내  
의 “안락한 산행으로서 안전하고 완만한 슬로프”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  
여행의 하자와 정보제공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여행업자는 “당  
신은 스노보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이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  
명합니다”는 여행설명을 통해 스키여행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위험하지 않다  
는 것이 대한 신뢰를 여행참가자에게서 불러 일으켰고 이를 통해 스키와 스노  
보드통합과정이 초보자에게도 적절하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였다.<sup>38)</sup>

또한 프로그램 설계의 의무에 이외에도 여행주최자는 스포츠 이벤트의 중

36) Mertens, in: MünchKomm, 3. Aufl. (1997), § 823 Rn. 325f.

37) OLG München, NJW-RR 2002, 694 = SpuRt 2002, 117 (118). 연방대법원(BGH) (Beschl.  
v. 16. 3. 2004 - X ZR 71/02)은 여행업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8) OLG München, NJW-RR 2002, 694 = SpuRt 2002, 117 (118).

류에 따라서 의무는 안전계획을 작성하고 특정 위험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이벤트의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가이드와 스포츠 교사에게 적절한 안전 지침에 의무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도 진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은 여행업자의 조직상 과실(Organisationsverschulden)로 파악할 수 있다.<sup>39)</sup>

지형적인 요인으로는 눈사태 또는 산사태 우발지역, 암벽의 붕괴와 낙석, 응달지역의 결빙, 국지성 돌풍 발생지역, 급류가 발생하는 V자 계곡 등을 들 수 있다. 인위적 위험요인으로는 집단이나 개인간의 관계 및 개인별 특성요인으로서 리더와 대원간의 의견차와 팀워크 문제, 리더의 통솔력 부족, 심리적, 정신적 불안 및 육체적 피로, 영웅심, 과신 등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부적절한 산행 계획, 장비 및 식량 등의 준비부족, 경험부족과 등반기술 미숙, 위험에 대한 판단력 결여와 대처능력 부족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스키여행의 주최자는 자신의 서비스인 그와 같은 스포츠가능성을 조직해야 하고 일반적인 위험을 넘는 여행자의 위험을 회피하도록 조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이미 München고등법원(OLG)이 이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여행자는 야생수영연습이 있는 하이킹 코스의 책임자를 감독하고 코스참가자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바위를 피하도록 통제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sup>41)</sup> 또한 안전상의 근거로 Frankfurt a. M. 구법원(AG)은 가령 주최자가 물디브에 있는 타인의 급부로 제공된 잠수코스를 적어도 여행객이 위험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42)</sup>

한편 여행업자의 잠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독일민법(BGB) 제651f조 제1항에 따라 입증책임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BGH)<sup>43)</sup>은 “여행업자는 패키지여행에서 승마코스과 승마여행을 제공하였고 이를

39) Röckrath, Die Haftung für Unfälle auf Berg- und Skireisen - am Beispiel des Lawinenunfalls im Tiroler Jamtal, VersR 2002, 1193 (1197).

40) Röckrath, Verkehrssicherungspflichten des Veranstalters von Berg- und Skireisen, Zugleich Besprechung von BGH, Urt. vom 12. 3. 2002, RRa 2002, 197 (198f.): BGH, NJW-RR 2002, 1056 (1057).

41) OLG München, RRa 1995, 204.

42) AG Frankfurt a. M., NJW-RR 1991, 954 (955).

현지에서 예약이 가능하였다. 승마에 적절하지 않은 과민한 말의 상태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여행의 하자로 파악하였다. 말의 신경성이 즉흥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는 독일민법(BGB) 제651f조 제1항에 따라 면책가능성과 함께 과실추정에 따라 판단하며 이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여행자가 제시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고려되는 과실의 구성요건들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패키지여행에 대한 1990년 6월 13일 유럽지침(Richtlinie 90/314/EWG vom 13. 6. 1990 über Pauschalreisen)에서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 IV. 독일민법(BGB)상 여행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른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독일민법(BGB)은 여행주최자에게 보증된 정상 또는 계약에 부합하는 여행을 제공할 의무(제651c조 제1항)를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51c조-제651f조)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내용으로 여행자의 시정(Abhilfe)청구권(제651c조 제2항), 자력구제(제651c조 제3항), 대금감액청구권(제651d조), 해지권(제651e조), 손해배상청구권(제651f조)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여행의 하자에 대해서는 여행자는 감액청구권(제651d조)이외에도 해지권(제651e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651f조)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무과실 책임인 시정청구, 대금감액, 해지와는 달리 그 하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제651f조 제1항). 추가적으로 여행업자가 하자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sup>44)</sup> 가령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여행의 하자<sup>45)</sup>는 가령

43) BGH, NJW 2005, 418.

44) BGH, NJW 2005, 418: 채권법개정과 관련하여 Führich, Reisevertrag nach modernisiertem Schuldrecht, NJW 2002, 1082.

인도네시아에서의 트레킹여행시 안내서에서 제공된 루트와는 다른 루트를 선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전문 안내인이 없고 추가적 자동차운송이 시행된 경우에 성립한다.<sup>46)</sup>

감액청구권의 요건은 각각 하자의 통지 및 여행지에서 현지 여행안내인에 대한 시정요구가 성립하여야 한다. 물론 종종 자연환경을 근거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스키여행이나 카누여행의 경우와 계약상 보장한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의 경우 시간적인 이유로 시정요구가 이미 불가능하거나 이 때문에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해지는 여행이 개시되어 여행이 실행중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해지권은 여행의 현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여행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계속이 여행자에게 기대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sup>47)</sup> 스포츠서비스의 경우 가령 테니스장이나 강사가 없는 경우 테니스훈련시설의 이용을 계속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1. 감액청구권과 감액범위

감액정도는 하자의 지속성(Dauerhaftigkeit)과 현저성(Erheblichkeit)에 따라 정해지고 여행가격의 감액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기준표(Frankfurter Tabelle)<sup>48)</sup>를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프랑크푸르트 기준표에 따르면 가령 승마기회를 상실한 경우나 요트, 서핑 혹은 스킨스쿠버학교가 없는 경우 여행가격의 5-10%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며<sup>49)</sup> 몰디브 여행<sup>50)</sup>의 경우 특별한 여행목적으로 인해 심지어 20%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Düsseldorf 구법원(AG)은 자신의 판결에서 서핑가능성<sup>51)</sup> 및 스킨스

45) Ton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 651c, Rn. 3ff.

46) OLG Düsseldorf, NJW-RR 1995, 622.

47) OLG Frankfurt a. M., NJW-RR 2005, 132.

48) ADAC-Tabelle zur Reisepreisminderung, NJW 2005, 2506.

49) Tonner, Der Reisevertrag, 4.Aufl. (2000), Rn. 231.

50) AG Frankfurt a. M., NJW-RR 1991, 954.

51) AG Düsseldorf, Urt. v. 21. 1. 1997 - 230 C 12504/96.

쿠버나 윈드서핑가능성<sup>52)</sup>이 없는 경우 각각 여행가격의 10%의 감액을 인정할 바 있다.

윈드서핑이 추가적으로 여행안내서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 댓가로만 가능한 경우 여행가격의 2%만 감액한 바도 있다.<sup>53)</sup> 테니스장이나 보장된 수중스포츠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여 20%의 감액을 인정하였으며<sup>54)</sup>, 수영장이 없거나 수영장이 오염된 경우에는 여행가격의 10-20%를 감액할 수 있다.<sup>55)</sup>

München 구법원(AG)은 비치발리볼경기장의 모래에서 녹슨 못들 때문에 스포츠활동이 현저한 위협에 노출된 경우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5%의 감액을 인정한 바 있다.<sup>56)</sup>

골프의 경우 Frankfurt a. M. 지방법원(LG)<sup>57)</sup>에 따르면 전일동안 골프코스에서 최소 10명의 인원수를 알려주고 예약을 한 경우 한명의 참가자만 코스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20%의 감액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코스에 참여하려는 다른 여행자들의 기대는 여기서 수포로 돌아갔다.

Frankfurt a. M. 고등법원(OLG)은 위에서도 언급한 킬리만자로판결에서 50%의 감액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58)</sup>

하지만 여행의 전체 급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저하지 않은 하자, 가령 수많은 수중스포츠 외에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감액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여행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일부급부의 이용의사를 여행업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하자가 전체여행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전체여행가격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편의 비용도 이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sup>59)</sup>

52) AG Düsseldorf, Urt. v. 6. 7. 1990 - 43 C 826/88.

53) LG Duisburg, NJW-RR 2003, 1362.

54) LG Kleve, NJW-RR 1997, 1140; 카리브지역의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한 사례로는 LG Hamburg, NJW-RR 1997, 1205.

55) AG Bad Hornburg, NJW-RR 2003, 47.

56) AG München, NJW-RR 1999, 1146 (1147).

57) LG Frankfurt a. M., NJW-RR 1990, 700.

58) OLG Frankfurt a. M., NJW-RR 2002, 272 = SpuRt 2002, 68 (69).



## 2. 손해배상청구권

감액이외에도 여행자는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독일민법(BGB) 제651f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독일민법(BGB) 제651f조 제2항에 따라 휴가기간이 무익하게 소모된 것에 대한 금전배상(휴가일당 50유로까지<sup>60)</sup>)을 요구할 수 있다. 이행보조자(독일 민법(BGB) 제278조)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이외에도 독일 민법(BGB) 제823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물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상 실무적으로 여행하자의 50%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헬기스키여행의 여행주최자는 참가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스키여행에 필요한 스키안내자와 비행기에 대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인 독일 민법(BGB) 제823조 제1항에 따라 조직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sup>61)</sup>

München 고등법원(OLG)은 위에서 언급한 Jamtal-판결에서 원고에게 18,000 유로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입은 사고로 인해 일실이익과 여행대금의 액수로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여행주최자에게 판시하였다.<sup>62)</sup>

Frankfurt a. M. 지방법원(LG)의 입장에 따르면 독일민법(BGB) 제651f조 제2항에 따라 휴가기간이 무익하게 소모된 것과 대체휴가의 배상에 대한 금전배상은 최소한 50%의 하자가 인정된 경우부터 인정된다.<sup>63)</sup> 바닷가 휴가와 함께 요트항해여행과 같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여행금부의 경우 여행 서비스의 일부만 50%이상 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sup>64)</sup> 나머지 잔존휴가의 가치가 손해액의 산정시 고려될 수 있다.

59) LG Hannover, NJW-RR 1999, 1004.

60) LG Frankfurt a. M., NJW-RR 1992, 823 (824).

61) BGH, NJW-RR 2002, 1056.

62) OLG München, NJW-RR 2002, 694 = SpuRt 2002, 117.

63) LG Frankfurt a. M., NJW 1984, 1762.

64) LG Hannover, NJW-RR 1999, 1004.

## V. 결론

2012년 독일국가예산에서 새로운 내각은 스포츠분야에 대한 조치들을 위해 23억 9백 4십만 유로를 책정하였다. 올림픽엘리트스포츠촉진에 대해 독일연방내부성만도 약 13억 2백만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올림픽 당시보다 4백만유로가 더많은 액수이다. 독일 몇몇 주들의 헌법들도 주, 자치단체로 하여금 스포츠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헌법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위 국가목적(Staatsziel)이라고 한다.<sup>65)</sup> 스포츠진흥을 국가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브란덴부르크주 헌법 제35조, Mecklenburg-Vorpommern주 헌법 제16조 제1항 제1문, Nordrhein-Westfalen주 헌법 제18조 제1항, 작센주 제11항 제1항, Sachsen-Anhalt주 헌법 제35조, Thüringen주 헌법 제30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융합정책과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면서 여가시간동안 스포츠활동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여행계약의 스포츠급부내용의 가능성들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위에서 언급한 독일민법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행업자의 의무들과 의무위반들과 독일법원들이 인정한 청구권의 범위는 앞으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해석론에 대한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를 바란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의 근거로 스포츠장소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여행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해당 위험과 지형지세, 개별 설비의 운영 및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고지의무가 부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65) Steiner, Staatsziel Sportförderung ins Grundgesetz?, SpuRt 2012, 238.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혜,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2007. 8), 155면.
- 권순희, 독일법상 여행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 비교사법 제17권 4호 (통권 51호), 376면.
- 손석정, 스포츠관광 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0권 1호(2011), 187면.
- 이재형, 스포츠관광 정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2003.6), 127면.
- 주지홍, 기획여행계약에서 스포츠옵션활동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3호 통권 제24호 (2010. 8), 135면.
- Fritzweiler, Jochen, Sport als Gegenstand einer Urlaubsreise - Vertragliche und deliktische Haftung des Reiseveranstalters, NJW 2005, 2486.
- Fritzweiler, Jochen, Neueste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NJW 2000, 997.
- Fritzweiler, Jochen,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in den Jahren 1999 und 2001, NJW 2002, 1014.
- Fritzweiler, Jochen, Rechtsprechung zum Sportrecht in den Jahren 2002 und 2003, NJW 2004, 989.
- Tonner/Krause, Urlaub und Witterungsrisiko, NJW 2000, 3665.
- Fritzweiler/Pfister/Summerer(Hrsg.), Praxishandbuch Sportrecht, 1998.

- Führich, Ernst, Reiserecht, 5. Aufl., 2005.
- Führich, Ernst, Reisevertrag nach modernisiertem Schuldrecht, NJW 2002, 1082.
- Noll, Rainer, Reiseaktivitäten von Vereinen und Verbänden im Licht des Pauschalreiserechts, RRA 2004, 98.
- Rodegra, Kay P., Skiurlaub und Recht, MDR 2009, 1322.
- Röckrath, Luidger, Die Haftung für Unfälle auf Berg- und Skireisen - am Beispiel des Lawinenunfalls im Tiroler Jamtal, VersR 2002, 1193.
- Röckrath, Luidg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des Veranstalters von Berg- und Skireisen, Zugleich Besprechung von BGH, Urt. vom 12. 3. 2002, RRA 2002, 197.
- Steiner, Staatsziel Sportförderung ins Grundgesetz?, SpuRt 2012, 238.
- Tonner, Klaus, Der Reisevertrag, 4.Aufl., 2000.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age 2012.
- Tonner, Klaus/Krause, Katja, Urlaub und Witterungsrisiko, NJW 2000, 3665.

[Abstract]

## **Zivilrechtliche Haftung des eines Reiseveranstalters für Sportsreise in Deutschland**

Kim, Ki-Young

*Dr.jur., Research Prof., Medical law Institute, Korea Univ.*

Die hierbei auftretenden Pflichten eines Reiseveranstalters bei Leistungsstörungen bedürfen somit stets einer besonderen Betrachtung im Vergleich zu seinen übrigen angebotenen Teilleistungen.

Der Begriff des Reiseveranstalters ist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in

Touristik-Unternehmen dann als Reiseveranstalter behandelt, wenn es die Leistungen in eigener Verantwortung zu erbringen verspricht. Wenn das Reiseunternehmen mit Hilfe seines Reiseprospekts nach einem vorher festgelegten und ausgeschriebenen Reiseprogramm Leistungen wie zum Beispiel Golf-, Tennis- und Skikurse, Tauch- und Surflehrgänge, Segeltörns, Skitouren- und Bergsteigen und Ähnliches anbietet, behält es trotz einer Vermittlung von Fremdleistungen (Sportlehrern, Bergführern) und einer Inanspruchnahme von anderen Leistungsträgern seinen rechtlichen Status als verantwortlicher Reiseveranstalter. Nicht immer sieht sich der Reisende einem Branchenriesen als Veranstalter gegenüber, sondern auch einem (Berufs- oder Sport-) Verband, einem Verein oder einer ähnlichen Institution.

Daher sollen im Folgenden, ausgehend von der Problemstellung den Begriff des Reiseveranstalters und die speziellen Pflichten (II) und Pflichtverletzungen (III) der Vertragsparteien behandelt werden und die Höhe der von Gerichten bejahten Ansprüche (IV) und schließlich der Schlussfolgerung(V) gezogen.

**Key words** : Reiseveranstalter, Sport, Sportsreise, Reisevertrag, Golf, Tennis, Ski